

일반공급 안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

1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동거인, 외국인)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의 공급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나, 경쟁 발생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3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재당첨 제한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

구분	비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 청약가능)
2순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분(전용면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문 아이파크 자이 청약가능 주택형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20㎡, 41㎡, 59㎡, 84㎡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 41㎡, 59㎡, 84㎡, 99㎡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가능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 요건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충족 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일반공급 1순위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 [동거인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하여야 합니다. 2순위 :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청약절차 안내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청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2 |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 본 아파트의 공급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나, 경쟁 발생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 3 | 재당첨 제한 無**
 -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주택소유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도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가능 면적	전용 85㎡ 이하	전용 85㎡ 이하	면적 제한 없음	전용 85㎡ 이하	면적 제한 없음
산정방법	관련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름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거주지역 ▷ 배정기준표 ▷ 자녀수 ▷ 청약신청자 연령 ▷ 추첨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거주지역 ▷ 가정산정 ▷ 추첨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이전기관 및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거주자 : 해당지역 청약신청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청약신청				
기타사항	신청자 본인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선택 불가), 특별공급 중복청약 불가(둘 다 무효 처리)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세대원의 동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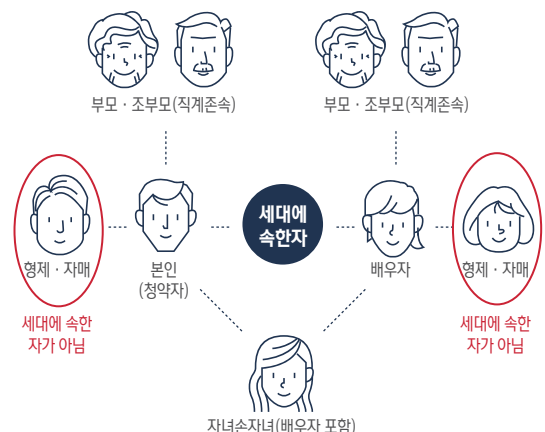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Click
➔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 주택소유확인 Click
➔
건축물대장정보, 분양권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확인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청약통장가입조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확인해보세요.
➔
청약통장 가입일, 청약통장 납입금액 확인

청약신청 및 청약자격확인인 청약Home(www.applyhome.co.kr)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안내 | 일반(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해당기관으로 신청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2 인터넷 청약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경기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서울 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 저축에 가입되어 해당 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 북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성장지원과	

신청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안내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 포함)인 자. ※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
2 신청유형 확인 필수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우선공급 50%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 일반공급 20% 소득 160% 초과 - 추첨제 30%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30% 물량)가 신설되었습니다. ※ 단,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3.31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신청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기준(우선·일반)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산정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N-8), 100% 기준}[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어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안내 |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현재 및 과거 모두 주택 소유 無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신청유형 확인 필수 소득 130% 이하 - 우선공급 50% 소득 160% 이하 - 일반공급 20% 소득 160% 초과 - 추첨제 30%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 충족)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구입경험이 없는 청약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추첨제(30% 물량)가 신설되었습니다. ※ 단, 부동산가액(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1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3 소득세 납부조건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청약통장 가입조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확인

공급유형	구분	혼인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자(1인 가구)		
			단독세대가 아닌자 (등본상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자)	단독세대 (등본상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소득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	X	X (전용 60㎡ 이하의 경우 가능)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	X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X	
	1인 가구	160% 이하	X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X	○	

신청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기준(우선·일반) 공급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② 소득기준(우선·일반) 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2. 추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안내 |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자
2 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 경쟁 발생 시 당첨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 미성년 자녀수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청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안내 |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경쟁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거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조건 충족 및 무주택 세대주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직계존속의 무주택 조건 충족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8년 이상~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30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신청대상자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기타지역(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